

초광역권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(수정공고)

2024년도 「초광역권 선도기업」 선정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※ 본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572호('24.11.15.)에서 수정된 공고입니다.

2024년 11월 26일

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

1. 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** : 시·도간 공급망 연결 및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
- **사업내용** :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초광역권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전담PM 매칭 및 기술사업화 관련 바우처 지원

< 초광역권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계획 >

구분	주요내용
지원대상	초광역권 선도기업
유효기간 및 지원기간	선정일로부터 2년('24년 선정 → '25년~'26년) / 최대2년 지원
지원규모 및 한도	기업당 최대 2억원(1억원/연간)
지원내용	· (정책금융)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금융 연계지원 프로그램 · (기술사업화 패키지) R&D기획, 제품고급화, 디자인·브랜드 개선, 마케팅 등 '초광역 혁신성장 바우처' 지원 · (네트워킹) 포럼 및 세미나, 기술교류회, 임직원 교육 및 명사특강 등 전용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· (전담PM 매칭) 초광역권 선도기업별 PM 1인 매칭, 기술애로 해소, 정부지원시책, 기업경영 자문 등 방문 컨설팅 지원

2. 지원내용

□ 선정규모 : 12개사

□ 지원내용 :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초광역권 선도 기업을 선정하여 전담PM 매칭 및 기술사업화 관련 바우처 지원 등

○ (정책금융)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기술보증 프로그램

* Kibo-Star 벨리 프로그램 內 초광역권 선도기업 트랙신설 : 보증지원 사전한도 최대 50억, 보증금액 산정우대, 보증비율 95%, 보증료율 0.5%p 감면, 제한조건(창업후 12년 이내) 배제

○ (사업화 지원) R&D기획, 제품고급화, 디자인·브랜드개선, 마케팅 등 초광역권 선도기업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

< 패키지지원 메뉴판(안) >

구분	내용
기술협력형	① R&D기획, ② 선행기술조사, ③ 특허분석, ④ 기술교류, ⑤ 수요기술 발굴 및 확보, ⑥ 연구 인프라(장비, 인력 등) 확보지원 등
거래협력형	① 사업화전략 및 민간투자 컨설팅, ② 상품기획, ③ 제품고급화, ④ 인증 및 특허지원, ⑤ 시장분석 보고서, ⑥ 마케팅전략 수립, ⑦ 전시회 참가 지원, ⑧ 디자인 개선 등

* 기술협력형+거래협력형 등 혼합형 가능

- (규모) 기업당 최대 2억원(1억원/연간, 타권역 협업기업 컨소시엄 허용)

- (방식)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성장 서비스를 수행하고 사후정산

* 지역혁신 선도기업-초광역권 선도기업간 중복지위 인정, 중복지원은 불가

↳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초광역 혁신성장 바우처 外 지역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원 불가

- (운영) 초광역권 선도기업 소관 테크노파크

○ (네트워킹) 포럼 및 세미나, 기술교류회 등 전용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

○ (전담PM 매칭) 초광역권 선도기업별 PM 1인 매칭, 기술애로 해소, 정부지원시책, 기업경영 자문 등 방문 컨설팅 지원

3. 신청대상 및 신청요건

□ 신청대상 : 지역주력산업 영위 지역 중소기업

-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, 중견·대기업은 참여 불가
- *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주력산업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
□ 신청요건

- 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해당하며, 초광역권 기업간 협업 또는 협력을 실적을 보유한 기업

< 신청자격 요건 >

구분	상세내용	
기본요건 (5개 모두 충족)	❶ 지역 :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(수도권 제외) ❷ 업종 : 지역주력산업 업종 해당 기업 ❸ 고용 :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❹ 형태 :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(법인·단체 포함) ❺ 지역별 자격요건 : 지역별 스타기업 평균값을 기준으로 필수지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, 공통지표 2개 충족 혹은 공통 및 선택지표 각 1개 이상 충족해야 함	
	필수지표	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지역별 스타기업 평균 이상
	공통지표	❶ 최근 3년 평균 고용증가율 ❷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❸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❹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중
	선택지표	❶ 신규고용인원 전년도 지역청년인재 비율 ❷ 기업부설연구소 지역내 보유 ❸ 최근 3년 평균특허 출원 및 등록수
최소요건 (1개 이상 충족)	❶ 권역외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, 생산, 판매 등을 위한 MOU체결 실적 보유 ❷ 권역외 기업과 거래관계(매입·매출) 실적 보유	

*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대기업 관계회사, 기타 부도, 휴폐업, 국세(지방세)체납, 채무 불이행, 파산·회생기업, 자본전액잠식, 부채 1,000% 이상 등 신용상태 불량기업,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업 등 부실기업 제외

** 공고일 기준, 최근 5년 이내 MOU체결 실적 보유기업 혹은 최근 3년 이내 거래관계 실적 보유기업
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

- 공고기간 : 2024. 11. 15.(금) ~ 2024. 11. 29.(금)
- 접수기간 : 2024. 11. 15.(금) ~ 2024. 11. 29.(금) 18:00까지

□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

- (신청서식)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 내 붙임 서식 사용
 -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시에 체크된 제출서류는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

< 제출서류 목록 >

연번	세부내용	제출서류	
		필수	해당시
1	초광역권 선도기업 신청서	○	
2	중소기업확인서	○	
3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○	
4	MOU 체결, 기술이전 계약 등 기술협력 실적 증빙자료 (※ 인정기준: 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)		○
5	전자세금계산서, 매출원장 등 거래관계 실적 증빙자료		○
6	① (매출) 연도별('21~'23년) 표준재무제표증명원(국세청 홈텍스 출력본) 또는 감사보고서(외부감사 대상기업인 경우) ② (고용) 연도별('21~'23년)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본) ③ (수출) 연도별('21~'23년) 수출입실적증명서(한국무역협회 발행본),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제출(KTNET 발행본 제출 가능)	○	
7	① (요건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(KOITA 발행본, 유효기간 내) ② (R&D 투자)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제출 ③ (특허) 최근 3년 이내 특허증 및 특허 출원사실증명원(사본가능, 원본대조필)	○	
8	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대표자, 담당자) 각 1부	○	
9	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○	
10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○	
11	지역청년인재에 해당하는 직원의 재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		○

○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 → 신청서류* 제출(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)

* 신청서류는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

*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

*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및 허위로 작성한 경우 요건 검토 시 불이익

○ (접수처)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(<http://www.smttech.go.kr>)

5. 선정절차

○ 모집 공고(중기부·전문기관) → 서류신청 및 접수(지역기업, TP) →
요건검토 및 추천(TP) → 선정평가 → 최종 선정(중기부·전문기관)

사업공고	⇒	서류신청 및 접수	⇒	요건검토 및 기업추천	⇒	선정평가	⇒	기업선정 및 결과통보	⇒	선정서 발급
중기부·TIPA		지역기업→TP		TP → TIPA		TIPA		중기부·TIPA		중기부
11.15.(금)		~11.29.(금)		~12.5.(목)		~12.20.(금)		~12월말		'25.1월

6. 평가기준

□ 평가 세부항목

구분	항목	세부내용	비고
협업역량 (60)	기술협업 실적 (15)	· 신청기업과 지역 외 기업과의 MOU 체결, 기술이전 계약 등 기술협력 실적	정량
	거래관계 실적 (15)	· 신청기업과 지역 외 기업과의 거래 기업수, 매출 대비 거래액 비중 등 거래실적	
	필요성 및 적정성 (15)	· 지역 외 기업과의 협업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	정성
	기대효과 (15)	·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혁신성과 창출 가능성	
기업역량 (40)	성장성 (20)	· 최근 3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 · 최근 3년 연평균 상시근로자수 · 최근 3년 연평균 수출 증가율	정량
	혁신성 (20)	· 최근 3년 연평균 연구전문인력수 또는 연구전문인력 증가율 · 최근 3년 연평균 R&D 투자규모 또는 매출액 대비 R&D 투자액 비중 · 최근 3년간 특허 등록 건수 또는 연평균 특허 증가율	

7. 관련 법령

□ 지원근거

법령	관련 조항
지방분권균형발전법	▶ 제14조(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지역중소기업법	▶ 제12조(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)

□ 관련규정

구분	관련 규정
고시	▶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	▶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
	▶ 초광역권 선도기업 관리지침

8. 유의사항

-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,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선정평가 결과 예비선정 기업*은 추후 초광역권 선도기업 선정취소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.(20개사 총량)

* 선정후보 중 미선정 기업

9. 문의처

지역	기관명	주소	담당자	전화/이메일
부산	부산테크노파크	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-16(엄궁동) 211호 기업지원단 기업혁신지원팀	이선하 차장	051-320-3534 lsha10@btp.or.kr
대구	대구테크노파크	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, 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기업육성지원센터	박정기 선임	053-757-3734 nicekee@dgtp.or.kr
광주	광주테크노파크	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, 본부동 1층 기업지원본부 기업육성팀	서은희 선임	062-602-7221 seh0922@gjtp.or.kr
대전	대전테크노파크	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IT전용벤처타운 2층, 기업지원단 기업성장팀	김해리 책임	042-930-4851 hrkim@djtp.or.kr
울산	울산테크노파크	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15, 기업지원단 성장거점지원실	신현철 팀장	052-219-8722 hcshin@utp.or.kr
강원	강원테크노파크	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-10,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	김문영 과장	033-248-5611 moon2605@gwtp.or.kr
충북	충북테크노파크	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 76, 본부관 기업지원단 기업육성팀	김수연 전임	043-270-2216 sykim@cbtp.or.kr
충남	충남테크노파크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층 1201호 기업지원단 스타기업육성팀	이정현 과장	041-589-0634 fangse@ctp.or.kr
전북	전북테크노파크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-5, 기업지원단 지역균형사업팀	김태진 책임	063-219-2122 kimy0906@jbtp.or.kr
전남	전남테크노파크	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 4로 13, 전남TP 기업진흥본부 성장거점지원센터	이병곤 선임	061-729-2532 lbk335@jnnp.or.kr
경북	경북테크노파크	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, 기업지원단 기업성장지원센터	김기태 전임	053-819-3026 camysa0603@gbtp.or.kr
경남	경남테크노파크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, 기업지원단 성장지원팀	방지영 연구원	055-259-3640 jy632@gntp.or.kr
제주	제주테크노파크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,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	진경희 선임	064-720-3056 pr@jeutp.o.kr
세종	세종테크노파크	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, 세종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	황현숙 전임	044-850-2144 hhs@sjtp.or.kr